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63호
2023. 4. 3.(월)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5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
제86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제86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7
제86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10
제86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13
제86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16
제860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
제86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8607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22
제8608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공 고

제2023-97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추가)	26
------------	---------------------------	----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5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지원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의 전문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능지수가 70~85 사이의 학생을 말하며 학습과 함께 사회성, 관계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식의 습득을 위한 도움이 필요함.
- 나.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 나.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 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학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 유기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 존중 정신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동물학대 예방 교육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3조에 따른 하자 검사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설공사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시행 및 하자관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

제자 및 도급계약 상대방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이하 ” 시스템 “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내역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설물 공사 이후 체계적인 관리방법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하자검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하자보수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예산을 새로 들여 공사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음.
- 나.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명확한 하자검사의 행정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3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다.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제5조, 제6조)
-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제7조)
-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제8조)
- 바.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제9조)
- 사. 시의회 보고 의무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학생 및 학부모·시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직업계고등학교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고등학교 진학 집중,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호도 감소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있어 위기에 봉착해 있음.
- 나.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 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가 되도록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 다. 교육감의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실시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 및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경철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중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학생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사이버 폭력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사이버 폭력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2. 서울경찰청
3. 서울소방재난본부
4. 한국교통안전공단
5.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에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 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들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자치구와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교통 안전대책 수립을 하기 위함.
- 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생 교통사고 위험 관리 대상을 학교 밖으로 범위를 확대함(제1조)
-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다. 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라. 학교교통안전실태조사 실시와 결과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마.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사.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10조)
- 아.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가. 동 조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교육·학예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나. 이로 인해 동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단 한 차례도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북한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생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운영 성과나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통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 적립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용자” 를 “이용자 등”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상의 “이용자” 를 “이용자 등” 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7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를 “「도서관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30조”를 “「도서관법」 제34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

은 법 제156조”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1.13.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

나. 「도서관법」 전부개정(' 22.12.8.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8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 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원·교습소는 해당 보험의 만기일까지는 이전 규정을 인정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보다 하향되었다는 평가에 따른 교육부의 권고로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 금액에 적합하도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을 ‘1인당 배상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974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추가)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조례안 (1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